



2. 처분의 내용 : 중도매업 허가취소
3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
 - 3개월 연속 무실적(2018년 2,3,5월)
※ 2018년 4월은 업무정지 기간으로 실적산정 기간에서 제외
4. 처분근거 : 「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 [별표 4]
5. 처분 일 : 2018. 7. 30.
6. 이의제기 안내
 - 동 처분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, 당해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,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내,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내에 행정심판(행정심판법 제27조)을, 또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,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행정소송(행정소송법 제20조)을 제기할 수 있음.
7. 허가취소에 따른 행정절차 안내
 -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중도매인은 도매시장 내 배정받은 점포 반납, 보증금 환급 등의 절차를 거쳐 중도매업 허가취소 처리됨.
(허가취소 절차관련 문의 :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관리팀 ☎ 2640-6056)
8. 기타 문의처 : 도시농업과 도매시장관리팀(☎ 2133-5384)